



복무관리 특정감사 결과

2024. 4.

감 사 실

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배경 및 목적

공사(公社) 감사실은 ○○본부 □□처 △△부 ◇◇과장 A가 공사 자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 등 '갑질 행위'를 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.

이에 감사실은 위 신고 내용이 「임직원 행동강령」에서 금지하고 있는 '갑질행위'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고자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.

2. 감사실시 근거
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제19조(자체감사계획의 수립·실시)
- ○「감사직무 규정」제4조(감사의 종류)
- ○「감사직무 규정」제18조(감사실시 계획 수립 및 통보)
- ○「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신고 및 처리 지침」제10조(정식조사)

3. 감사대상

대상기관	감사기간	감사범위
○○본부	2024. 3. 27. ~ 4. 5.	신고내용에 따른 '갑질 행위' 관련 사항

4. 감사반 구성 : 총 3명(감사반장 1명, 감사반원 2명)

Ⅱ 감사결과

○○본부 ◇◇과장인 피신고인과 위탁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직원 사이에 언쟁 등 일부 갈등이 있었던 정황은 확인되었으나 ①그 과정에서 반말 및욕설 등의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②피신고인이 자회사 소속직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자회사 현장책임자에게 업무연락을하였으며 ③ 현장책임자에게 전달한 사항 또한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것임을고려할 때, 피신고인이 신고인 및 자회사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'갑질 행위'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.